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이정현 · 박선원  
곽상언 · 소병훈 · 정혜경  
윤준병 · 김남근 · 이수진  
김종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·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,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·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,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, 거짓·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

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7항·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).

##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폐업 사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21조제7항의 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

제28조제2항제3호 중 “이행에”를 “이행 및 사실 확인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

제3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

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            ① ~ ⑥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           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 <u>⑦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  <u>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폐업 사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27조(외국인투자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.            1. ~ 10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1. 12.</u>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7조(외국인투자위원회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  <u>11. 제21조제7항의 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</u>  <u>12. 13.</u> (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)           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

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

③ · ④ (생략)

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,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채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⑥ · ⑦ (생략)

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
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이행 및  
사실 확인에---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사  
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과태료) ① -----

<p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사</u> <u>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</u> <u>을 한 자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